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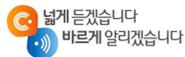
## 보도자료



보도일시	<b>2016. 3. 2.(수) 15:30</b>	배포일시	2016. 3. 2.(수) 13:30
담당과장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이재목 (044-215-4420)	담당자	송혜영 사무관 (044-215-4422)

### 업계·전문가집단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BEPS 대응지원센터」 설립

- 기획재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합동으로 「BEPS 대응지원센터」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한다.
  - 국내 기업들의 BEPS 대응조치에 대한 이해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원활한 BEPS 대응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센터 운영을 위한 「BEPS 대응지원센터」 사무소 개소식 및 합동 기관간 업무분담 및 운영방안에 대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은
  - '16.3.2일(수) 15:00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청사 「BEPS 대응지원센터」 사무소에서 개최된다.
  - ※ (참석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연구원장, 전경련 전무 등
- 센터는 BEPS 관련 국제동향 파악,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기업 의견 수렴 및 검토 등의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우선 3월부터 기업들의 BEPS 대응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앞으로 「BEPS 대응지원센터」는 동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기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한편,
  - 홈페이지 구축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 참고 1

## 「BEPS 대응지원센터」 업무 및 운영 방안

### 「BEPS 대응지원센터」 구성

- (구성) 기획재정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각 기관과 기획재정부가 위촉한 고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BEPS 대응지원센터」가 설치·운영하는 자문위원회



### 구성별 주요 업무

- (기획재정부) 세제관련 입법·건의검토 등 세계개편 관련 업무 등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 의견 수렴, 건의 등의 기업지원 등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제동향조사 등을 포함한 조세 연구 등
- (운영위원회) 센터 운영 관련 사항 협의·조정 등
- (자문위원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장 동향 파악·전문적 자문 제공 등

### 운영 방안

- 분기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조정할 예정이며, 기업 대상 설문조사·BEPS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

## 참고 2

### 「BEPS 대응지원센터」 설립 MOU(요약안)

- 「BEPS 대응지원센터」는 기획재정부, 전경련, 조세연이 공동운영
  - 각 기관은 상대 기관의 고유 권한 및 업무를 존중하며 상호 협조
  - 각 기관은 정보 등의 대외 보안에 각별히 유의
- 「BEPS 대응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업무
  - 기업 대상 설명회 및 포럼 등에 필요한 홍보·교육자료 감수
  - 국내·외 입법 동향에 대한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
  -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검토
- 「BEPS 대응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업무
  - 기업들을 대상으로 BEPS 대응에 대한 설문조사를 반기별 1회 시행
  - 센터를 통한 기업 의견 수렴 및 BEPS 대응조치 관련 홍보 수행
- 「BEPS 대응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업무
  - 센터 사무소 설치(조세연) 및 전담·겸임인력 배치를 통한 센터 운영 지원
  - BEPS 대응조치 및 입법 동향 등에 대한 홍보·교육자료 제작 및 국제 입법 동향 등에 대한 조사
- 「BEPS 대응지원센터」의 주요기능 및 운영
  - (주요기능) BEPS 관련 국제동향 파악,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기업 의견 수렴 및 검토 등의 기업지원 업무임
  - (운영위원회) 기획재정부, 전경련, 조세연, 실무책임자 및 기획재정부가 위촉한 전문가로 구성
    -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연간/분기별 활동계획 및 구체적인 기업지원방안에 대한 논의
  - (자문위원회) 센터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 제공을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위촉한 10인 이내의 회계법인, 로펌 등의 BEPS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가능

## 참고 3

### BEPS 프로젝트 15개 과제 조치사항

#### 1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

과제명	BEPS 이슈	주요 대응조치
혼성불일치 해소(2)	혼성금융상품·실체 등에 대한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 양국에서 이중 비과세	소득 지급국에서 과세(지급국 손금불산입), 미과세시 수령국에서 과세(수령국 익금산입)
특정국별인 유보소득 과세강화(3)	해외 자회사 소득을 본국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 유보하여 과세를 회피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제도 적용 범위 확대
이자비용 공제제도(4)	과도한 이자 지급액을 비용으로 공제받아 원천지국 과세회피	차입금 용도와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비용 공제되는 이자범위를 제한
유해조치 제도 폐지(5)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활동서비스,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쟁적 조세감면으로 저세율국으로의 소득이전 발생	각종 조세지원 제도의 유해성 여부 판단 및 정보교환 등 제도 투명성 제고

#### 2 국제기준의 남용방지

과제명	BEPS 이슈	주요 대응조치
조약남용 방지(6)	명목회사 설립 등을 통해 조세조약 수혜 자격을 부당하게 취득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한
고정사업장 회피방지(7)	원천지국 과세 축소를 위해 고정사업장 회피 - 단기 계약 체결, 기간 축소 등	조약상 고정사업장 적용 범위를 확대
이전가격 세계강화(8~10)	무형자산, 경영상 위험을 저세율국으로 서류상 이전하여 과세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	법률적 소유권 여부와 상관없이 개발 및 위험 부담 등의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소득을 분배

#### 3 투명성 확보

과제명	BEPS 이슈	주요 대응조치
통계분석(11)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과세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하거나 권고한 법률·회계법인 등에 대한 강제적 보고의무 부여
강제적 보고(12)	당국의 정보 부족	
이전가격 문서화(13)	과세관청이 입수하는 이전가격 정보가 불충분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자료(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분쟁해결(14)	조약 당사국간 상호합의의 분쟁해결 능력 미약	2년내 신속 해결, 미해결시 중재 절차 이행, 납세자 참여 확대 등 상호합의의 분쟁해결 능력 강화

#### 4 기타

과제명	BEPS 이슈	주요 대응조치
디지털경제(1)	인터넷 사업 등 디지털 경제로 인해 발생되는 신규과세 문제 발생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거래 등 전자상거래 과세방안 마련
다자간협약(15)	조약 관련 BEPS 산출물을 기시행중인 각국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는데 오랜 시간 소요	다자간 협정 체계를 마련하여 참여 국가간 양자조세협정 개정 효과 발생

※ 괄호( )안은 과제 번호